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505065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20102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505065 판결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한상중

피고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현상

변론 종결2018. 12. 14.

판결 선고2019.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943,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7. 12.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D 및 E에 다음과 같이 방수문 및 하드웨어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계약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은 2,429,258,132원, 계약보증금은 242,925,813원, 납품기일은 2016. 6. 30.이 되었는데, 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1. 품명 : 문, 방수문 및 하드웨어, 침수방 외 61
2. 계약금액 : 2,457,466,700원 (최종 2,429,258,132원으로 변경)
3. 계약보증금 : 245,746,670원 (최종 242,925,813원으로 변경)
4. 납품기일 : 2013년 11월 30.일 (최종 2016년 6월 30.일로 변경)
5. 하자보수보증기간 : 납품 후 24개월
6. 계약체결일 : 2013년 7월 12.일 (최종 변경계약일 2016년 2월 11.일)

2) 원고는 2014. 1. 10.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F에 다음과 같이 방수문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계약은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은 393,000,000원, 계약보증금은 39,300,000원, 납품기일은 2016. 10. 30.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1. 품명 : 문, 방수문 외 7
2. 계약금액 : 393,000,000원 (최종 410,176,803원으로 변경)
3. 계약보증금 : 39,300,000원 (최종 41,017,680원으로 변경)

4. 납품기일 : 2014년 6월 10.일 (최종 2016년 10월 30.일로 변경)

5. 하자보수보증기간 : 납품 후 24개월

6. 계약체결일 : 2014년 1월 10.일 (최종 변경계약일 2015년 12월 11.일)

3)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위 각 방수문 등의 성능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 이를 납품·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각 보증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2013. 7. 12. 피고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한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나중에 이 사건 제1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피고와 추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추가보증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추가보증계약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액	245,746,670원	보증금액	242,925,813원
계약금액	2,457,466,700원	계약금액	2,429,258,132원
계약일	2013년 7월 12.일	계약일	2015년 12월 11.일
계약이행기일	2015년 2월 28.일	계약이행기일	2016년 6월 30.일
보증기간	2014년 5월 3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보증기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계약자	소외 회사	계약자	소외 회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서발급일	2014년 6월 30.일	추가보증서발급일	2015년 12월 30.일

2) 이 사건 제2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2014. 1. 2. 피고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한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나중에 이 사건 제2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피고와 추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추가보증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추가보증계약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액	39,300,000원 (최종 41,017,680원으로 변경)
계약금액	393,000,000원 (최종 410,176,803원으로 변경)
계약일	2014년 1월 10.일 (변경계약 2015년 12월 11.일)
계약이행기일	2014년 6월 10.일 (최종 2016년 10월 30.일로 변경)
보증기간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
계약자	소외 회사
특기사항	2014. 1. 2. 발급한 보증서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보증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서발급일	2014년 1월 2.일 (추가보증서 발급일 2015년 12월 29.일)

3)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계약보증약관(국가 등 채권자)

피고(이하 이 표 내에서 "조합"이라 한다), 소외 회사(이하 이 표 내에서 "채무자"라 한다)

제1조(보증책임)

②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보증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보증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제3조(보증계약의 성립시기)

① 조합의 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성립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의 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실제이행기일까지 보증책임)

① 조합은 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보증채권자와의 보증계약은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이행기일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제10조 제1항 제5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④ 계약해제, 해지 사유가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전 15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기간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증금의 지급)

① 조합은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0조(면책조항)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제1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의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보증금 청구

②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 이 사건 각 계약 해제 등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계약에 정한 계약기간까지 방화문 등 각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고, 2017.

2. 3.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방화문 등 납품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7. 3. 14. 이 사건 제1계약에 대한, 2017. 4. 6. 이 사건 제2계약에 대한 계약해제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2017. 5. 2.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소외 회사는 방수문 등의 성능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은 뒤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속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계약의 납품기일을 수차례 연장하여 주다가, 결국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각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보증계약 기간 내 계약 해제가 아니어서 보증사고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보증사고로 정하고 있는데(제1조 제2항), 원고는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보증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정지조건의 미성취, 정당한 이유 존재, 위험부담, 채권자지체 등의 주장 가) 소외 회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원고에게 방수문 등을 납품·설치할 수 있었고, 이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방수문 등 납품의무의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인·허가가 없었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외 회사의 채무이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원자력 관계시설에 관하여 허가 등을 얻을 주체는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원고이고(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소외 회사는 방수문 등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를 납품할 수 없었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방수문 등을 납품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①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②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방수문 등 공급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게 된 것이므로, 위험부담 등의 법리에 따라(민법 제537조, 제538조 제1항)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방수문 등 공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③ 채권자지체의 법리에 따라(민법 제400조) 소외 회사가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이행을 보증한 피고의 책임도 없다.

3) 원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 이 사건 각 계약에 계약서에 없는 정지조건(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이 존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3조 제2항에 반하여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계약에 계약서에 없는 정지조건이 존재하였던 것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의 의미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품질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방수문 등의 재질, 표면처리 등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물품 및 가격 명세'에 나타난 사항들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주된 내용의 변경이 반드시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3조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보증금 지급의무는 면책된다.

4)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가 방수문 등을 납품하지 못한 경위나, 원고에게도 소외 회사의 납품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별도로 입은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계약보증금의 액수는 너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계약 해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1조 제2항에서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한편 제4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보증채권자로 한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이행기일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위 제1조 제2항 등 보증기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등이 보증기간 내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위 제4조 제1항에서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이행기일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한 것은 주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따로 연장하지 않아도 연장된 주계약의 기간에 따른다는 의미이고,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을 보증사고로 인정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제4조 제1항의 문언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으로 보증기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주계약인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기간과 동일한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증기간(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기간) 내 계약의 해제 통보가 이루어져야만 피고가 보증책임을 진다고 본다면, 채무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지체한 경우, 보증기간 내에는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행지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데, 보증기간이 지난 후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보증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약에 정한 계약기간까지 방화문 등 각 물품을 납품하지 않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2017. 3. 14. 및 2017. 4. 6.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2017. 3. 14. 및 2017. 4. 6.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보증금 합계 283,943,493원(=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보증금 242,925,813원 +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보증금 41,017,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2017. 4. 12. 이후 보증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6조 제1항)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정지조건의 미성취, 정당한 이유 존재, 위험부담, 채권자지체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지조건의 미성취

소외 회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원고에게 방수문 등을 납품·설치할 수 있었다고 하여, 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를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소외 회사의 방수문 등의 납품·설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이유 존재, 위험부담, 채권자지체

(1)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구매규격서에서는 "방수문은 지진사고 이후에도 방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부적인 손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진범주 1급 구조물에 해당하고,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기준 '4.9 내진범주 1급 구조물'과 동 규제지침 '4.27 내진범주 1급 구조물 설계하중조합 및 구조적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구매규격서 6.2.4.항), 원자력 품질보증 구매시방서의 계약특수조건 일반사항에서는, "계약자는 다음[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3호 제2장 제4절, 전력산업기술표준(KEPIC) QAP(원자력 품질보증)]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품질등급에 적합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1의 가.항)", "계약자는 국내법령과 적용 기술기준에서 법정검사 또는 공인검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1의 차.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설령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등에서 원자력발전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에게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는 소외 회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정도의 안전성과 성능을 갖춘 방화문을 설계·제작하여 이를 원고의 각 원자력본부에 설치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안전성 및 성능을 갖춘 방화문을 설계하거나, 그 제작방법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 방수문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작한 방수문(시험체 또는 시제품) 및 인·허가 서류를 위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인·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소외 회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인·허가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화문을

제작하였음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인·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진행하였던 인·허가 신청 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위 방수문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각 방수문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거나, 원고가 그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인·허가를 이 사건 각 계약상 소외 회사의 방화문 등 공급 의무의 정지조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3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사건 각 계약 또한 소외 회사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에 따른 성능 기준을 충족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여 허가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해 방수문 등의 재질, 표면처리 등이 사건 각 계약의 '물품 및 가격 명세'에 나타난 사항들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연히 예상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계약 이행 여부를 보증할지 여부나 그 보증 조건 등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계약의 주된 내용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수문 등에 대한 인·허가 등을 받을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거나, 원고가 위 인·허가 등에 협조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방수문 등의 공급을 받지 못하였던 이상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10%의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연

판사박성용

판사최유빈